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성주군 농촌협약의 필수조건인 농촌협약 위원회, 행정협의회 구성 등 농촌협약제도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구성 및 운영(안 제3장 제22조)

1) 농촌협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2)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센터의 운영 등

나. 농촌협약제도(안 제5장)

1) 협약의 기본내용

2) 협약조건

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운영(안 제6장)

1) 추진단 구성, 업무

2) 추진단 운영

3) 추진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

4) 위탁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3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1

2) 입법예고(2022. 1. 28. ~ 2022. 2. 17.) 결과,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미래지역활력과-383(2022.1.20.)]

4)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3331(2022.1.19.)]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별첨 2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를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10.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법인)을 말한다.
11.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12. “농촌협약 위원회”란 지자체 전담조직, PM단(민간전문가), 지역주민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농촌협약의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협의와 결정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13.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란 농촌협약과 관련하여 전담부서와 관계 부서 간의 협의와 연계・협업사업 간 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14.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시・군 전체의 사회・경제・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말한다.
15.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16. “전담부서(조직)”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2조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농촌협약 추진주체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자체와 주민 간 의견수렴
10.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11. 농촌재생뉴딜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제23조의 제목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을 “(중간지원조직 구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② 중간지원 조직 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 군수는 기존의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귀농귀촌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제34조를 제50조로 하고, 제31조를 제34조로 하며, 제28조를 제31조로 하고, 제24조를 제28조로 하며,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원센터를 선량하게 운영하고,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 해서는 안된다.

③ 제 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제35조 및 제36조로 하고,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제32조 및 제33조로 하며,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9조 및 제30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관리할때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 인계인수를 위탁 만료 10일 전까지 끝내야 한다.

제30조(종전의 제2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건설과장”을 “미래지역활력과장”으로 하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위탁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 앞에 “제4장 운영협의회”를 삭제한다.

제29조 앞에 “제4장 운영협의회”를 삽입한다.

제5장(제37조 및 제3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협약 제도

제37조(기본내용) ①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에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이라 한다)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38조(협약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장(제39조부터 제4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운영

제39조(추진단 구성) ①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자문위원회, 코디네이터로 구성・운영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관련 사업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0조(추진단 업무) 추진단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이하“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등 사후관리
6.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추진단 운영) ①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으로 법인화를 추진한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운영을 위하여 지원 보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42조(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4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추진위원회 설치)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46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민간위원장(추진위원간 호선 또는 추진단장 겸임 가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활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신활력사업 시행주체
3. 자문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
4. 지역 주민의 대표
5. 신활력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7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 및 중·장기 발전계획
4. 추진단 운영·관리 감독, 직원채용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4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9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군수는 신활력사업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50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첨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신 설>	10.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법인)을 말한다.
<신 설>	11.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신 설>	12. “농촌협약 위원회”란 지자체 전담조직, PM단(민간전문가), 지역주민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농촌협약의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협의와 결정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신 설>	13.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란 농촌협약과 관련하여 전담부서와 관계 부서 간의 협의와 연계·협업사업 간 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신 설>	14.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시·군 전체의 사회·경제·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말한다.
<신 설>	15.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신 설>	16. “전담부서(조직)”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2조(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2조(중간지원조직의 기능)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9. 농촌협약 추진주체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자체와 주민 간 의견수렴
<신 설>	10.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신 설>	11. 농촌재생뉴딜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10. (생 략)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23조(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3조(중간지원조직 구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에서 제안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 조직 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신 설>	③ 군수는 기존의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귀농귀촌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신 설>	제24조(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원활

	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원센터를 선량하게 운영하고,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생 략)	제28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제25조(위탁) 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제25조(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③ 제 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관리할때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 인계인수를 위탁 만료 10일 전까지 끝내야 한다.
<신 설>	제2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위탁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장 운영협의회	<삭 제>
<신 설>	제4장 운영협의회
제26조 (생 략)	제29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제27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생 략)	제30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농정과장, 안전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물 소재지 읍장·면장으로 하고, 위	③ ---------- ---------- ---------- 미래지역활력과장---------- ----------

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예외로 한다.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 ~ 제33조 (생 략)	제31조 ~ 제36조 (현행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와 같음)
제5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5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협약 제도
<신 설>	제37조(기본내용) ①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에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이라 한다)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협약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장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운영
<신 설>	제39조(추진단 구성) ①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자문위원회, 코디네이터로 구성·운영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관련 사업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 설>	제40조(추진단 업무) 추진단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이하“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등 사후관리
	6.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41조(추진단 운영) ①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으로 법인화를 추진한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운영을 위하여 지원 보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3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신 설>	제4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45조(추진위원회 설치)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신 설>	제46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민간위원장(추진위원간 호선 또는 추진단장 겸임 가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활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신활력사업 시행주체 3. 자문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 4. 지역 주민의 대표 5. 신활력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 설>	제47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 및 중·장기 발전계획 4. 추진단 운영·관리 감독, 직원채용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제4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49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군수는 신활력사업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제7장 보칙
제34조 (생 략)	제50조 (현행 제34조와 같음)

[별첨 2]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라. 작성자

미래지역활력과 지역활력담당 김 윤 철